

韓國醫學圖書館協議會會則

第一章 總 則

第1條 (設置) 本會는 社団法人 韓國圖書館協會(以下 圖協이라 稱한다) 定款 第26條에 依據하여 設置 하고 韓國醫學圖書館協議會라 稱한다.

第2條 (目的) 本會는 全國의 醫學圖書館의 提携下에 醫學圖書館事業의 發展을 圖謀하고 醫學圖書館事業의 振興으로 醫學의 進步와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章 事 業

第3條 (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醫學圖書館 相互間의 親睦
2. 醫學圖書館의 發展을 위한 調查研究
3. 醫學圖書館 相互間의 文獻資料의 交換, 補充의 協力, 複寫의 斡旋, 相互貸借의 協力
4. 醫學圖書館 職員의 育成 및 資質向上
5. 研究會, 講習會, 展示會 등의 開催
6. 國內外 關係團體와 의 連絡 및 協助
7. 其他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三章 會 員

第4條 (會員의 資格 및 種類)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4種으로 한다.

1. 團體會員—圖協會員으로서 醫學教育機關, 病院, 其他의 醫齒, 藥學關係團體의 圖書館 및 讀書施設을 가진 團體
2. 個人會員—圖協會員으로서 醫齒, 藥學關係圖書館 및 讀書施設에 勤務하는 者
3. 贊助會員—本會 設立趣旨를 贊同하여 本會事業을 贊助하는 個人 및 團體
4. 名譽會員—本會에 貢獻이 있는 個人 및 團體로서 理事會가 推薦하는 者

第5條 (入會節次) 本會의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入會를 申請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6條 (會費) 本會의 會員은 所定의 會費를 納入하여야 한다.

但, 會費의 等級과 金額은 總會에서 이를 定한다.

第7條 (資格喪失) 本會의 會員은 脫退 및 除名에 의하여 그 資格을 喪失한다.

但, 除名處分은 會員으로서의 義務를 履行하지 않은

者 또는 本會의 名譽를 損傷한 者에 대하여 本會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行한다.

第四章 任 員

第8條 (任員의 種類 및 定數)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名
2. 理事 9名(專務理事 1名)
3. 監事 1名

第9條 (任員의 任務) 本會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한다.
2.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며 第17條의 事項을 審議한다.
3. 專務理事는 會長을 補佐하여 會務를 總理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그 任務를 代行한다.
4.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每年 2回 以上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第10條 (任員의 選舉方法) 本會任員의 選舉方法은 다음과 같다.

1. 理事, 監事는 團體 및 個人會員中에서 總會가 이를 選出한다.
2. 會長, 專務理事는 理事會가 理事中에서 이를 互選한다.
3. 選出된 任員은 圖協會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11條 (任員의 任期) 本會任員의 任期는 2 年으로 한다.

但, 任員中 缺員이 생길 때에는 理事會에서 補選하되 補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12條 (任期의 空白期) 本會의 任員은 任期滿了時라도 後任者가 決定될 때까지 그 任務를 執行한다.

第五章 會 議

第13條 (會議의 種類) 本會의 會議는 總會, 理事會의 2 種으로 하되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4條 (總會) 本會의 總會는 團體會員의 代表者 및 個人會員으로 構成하고 會員 3分之1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한다.

1. 定期總會는 團體會員이 輪番으로 每年 1回 開催하되 議長은 當番館의 館長이 된다.
但, 當番館은 前年度 總會에서 決定한다.
2.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및 理

事會에서 議決할 때에 이를 開催하되 議長은 會長이 된다.

第15條 (總會의 機能) 總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本會則에 定해진 事項
2. 事業計劃의 審議
3. 豫算, 決算의 承認
4. 會則의 變更
5. 其他 重要な 事項의 議決

第16條 (理事會) 本會의 理事會는 다음과 같이 召集하며 理事 過半數 出席으로 成立하고 議長은 會長이 된다.

1.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2. 理事 4 名 以上이 要求할 때

第17條 (理事會의 機能) 理事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本會則에 定해진 事項
2. 總會에서 議決한 事項의 審議執行
3. 會則의 變更案 및 其他 總會에 附議한 案件의 審議
4. 其他 重要な 會務의 審議執行

第18條 (議事의 決定) 本會 諸會議의 議事は 出席者 過半數로써 決定하며 可否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六章 事務局

第19條 (事務局) 本會는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設置하고 事務長과 若干名의 事務職員을 들 수 있다.

1. 事務長은 專務理事가 된다.
2. 事務局의 職員은 會長이 이를 任免한다.
3. 事務局의 處務規程은 理事會에서 別途로 定한다.

第七章 財政

第20條 (財政) 本會의 經費는 다음의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1. 會費
2. 圖協의 補助金
3. 寄附金 또는 贊助金
4. 其他 收入金

第八章 解散, 其他

第21條 (解散) 本會를 解散코자 할 때에는 總會의 議決과 圖協會長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第22條 (會則의 變更) 本會則은 總會의 議決이 아니면 變更할 수 없다.

附 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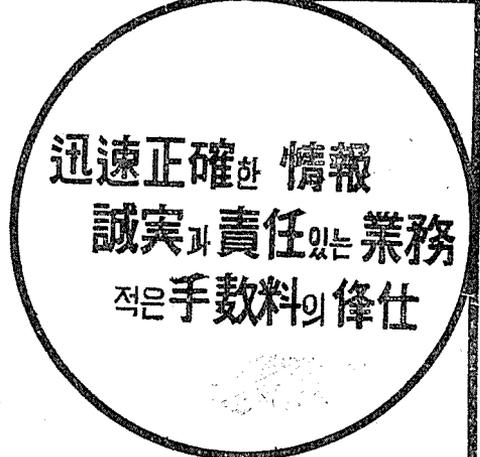
本會則은 圖協會長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1968年度

海外學術雜誌 豫約案内

1. 海外學術雜誌 · 新聞
2. 雜誌 백 넘버
3. 海外學術書籍
4. 마이크로 필름 및 機材

● 購讀節次에 對하여 問議하여 주시면 案内書를 보내 드립니다.



유네스코 韓國委員會 쿠폰代行機關
 株式會社 팬 아메리칸 서비스
 서울特別市 鍾路 3街 13의5(裕林빌딩 3層)
 電話 (74)3783 (73)4262 國際私書函 1647號